

부정 예방과 적발을 위한 세계 감사기준의 변화와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개혁방향

Suggestion of the Korean Public Sector Auditing Standards for
the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ternational and U.S.

안홍복(Ahn, Hong-Bok¹⁾)

ABSTRACT

This Paper suggested th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 fraud auditing standards for the fraud detection and preven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ternational and U.S. fraud auditing standards.

For doing this, this paper compared international and U.S fraud auditing standards with Koreans'. Being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three dimension of fraud auditing standards ;

(1) what is the aim of fraud auditing education?(the aim of fraud auditing standards), (2) what environment needed in the fraud auditing standards?(fraud auditing standards environment), (3) Who take the lead in establishment fraud auditing standards ?(leader of Korean fraud auditing standards)

We expects this three dimension will help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fraud auditing standards.

Key words : fraud detection, auting standards, korean public sector

1)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I. 서론

공공부분의 부정 및 부패 문제는 오랫동안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공공 부분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또한 모색해 오고 있었다. 세계 각 국들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부분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부정의 예방과 적발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의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회계 관련 부정관련 사건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공공부문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정의 제도적 예방과 방지는 효율적인 부정감사제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현행 공공부문의 부정감사제도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부정 관련 사항들은 그 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부정 예방과 적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반 재무제표감사와 부정감사는 다음 <표 1>과 같이 그 성격상 매우 상이한 요소가 많으므로 공공부문의 감사프로그램만으로는 부정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1> 일반 재무제표감사와 부정감사의 차이점

	일반 재무제표감사	부정감사
1. 정의	관련 회계기준 또는 법령에 의해 회계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감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일련의 실무적 감사행위
2. 접근방식(approach)	각종 감사기준 또는 법령에 따른 감사절차 수행	다양한 감사기법과 절차의 이용하여 융통적으로 수행
3. 초점	조직의 회계기준의 적용 타당성	조직 내부의 예외적이고 비정상적 사항
4. 적용 이론 및 실무	일반 재무회계 및 감사이론	행동과학, 심리학, 범죄학, 경제학, 회계학 지식

자료 : 안홍복, 권기정(2004), “지방자치단체 부정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부정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연구 18권 4호 : 107-134.

이러한 공공부문 부정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들은 행정·재정학 측면에서만 연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계학적인 원인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부정 및 비리의 근본 원인이 공공부문의 회계제도 및 감사제도의 미비에서 유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에 맞는 부정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도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부정의 예방과 적발은 거의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반부정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서는 아직까지 민간부분과는 달리 부정 감사를 위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부정감사기준은 규정이나 절차를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논리적이고 정합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투명도를 높이려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부정 감사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발에 시급히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정감사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공공부문의 부정감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국제회계사연맹의 부정감사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정감사기준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모두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부정의 개념 및 본질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부정감사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국제감사기준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기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정감사기준의 개발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 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II. 부정감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부정의 정의

부정이란 용어는 광의적으로 보면, 사해(詐害)나 변칙거래(irregularities)를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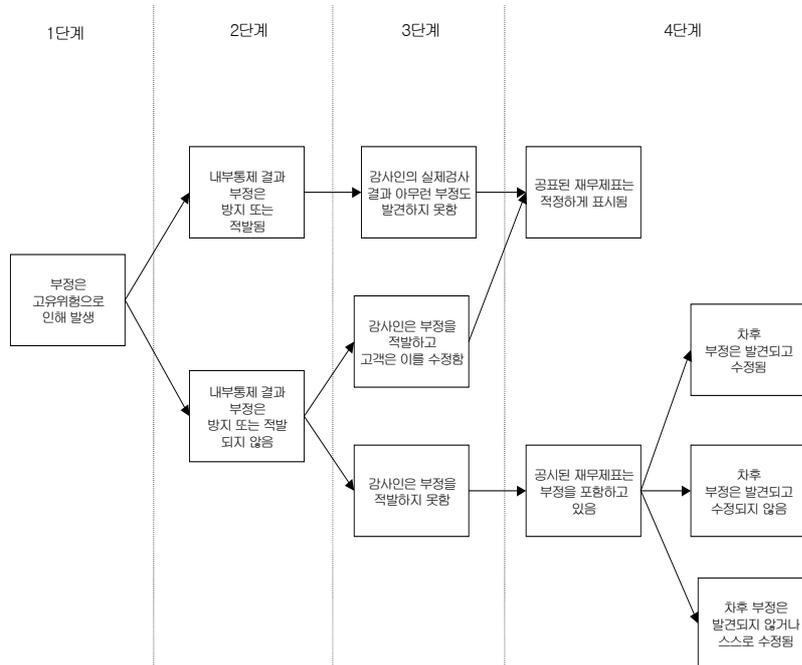
하는 개념이지만,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표시하거나 자산을 사취, 횡령, 불법사용 또는 부당 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 제240에서는 "부정"이란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부정의 예로는, 기록이나 문서의 조작, 위조 및 변경, 자산의 유용, 기록이나 문서로부터 거래의 효과를 은폐 또는 누락, 가공거래의 기록, 회계정책의 악용 등을 들 수 있다(권찬태·안홍복 2002)

2. 부정의 적발과 대책

1) 부정의 생성과 적발과정

재무제표 부정의 생성과 적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진다. 1단계는 경영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부정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에 오도된 정보를 포함하는 단계이다. 특히, 일부 부정은 기업의 고유 위험(예, 산업특성)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2단계는 재무제표 부정 중 고유위험에 의해 발생된 것은 내부통제제도에 의해 적발한다. 이 경우 더 이상의 고유위험에 의한 재무제표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가 미흡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재무제표 부정에 의한 오도된 정보가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다. 3단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부정에 의한 허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감사인에 의해 검토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공감사인은 다양한 부정적발을 위한 감사계획과 절차를 이용하여 중요한 부정에 의한 재무제표 조작이 존재하는지를 심도있게 감사해야 한다. 4 단계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부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부정의 발생과 적발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정발생과 적발과정



자료 : 안홍복, 권기정(2004), “지방자치단체 부정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부정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연구 18권 4호 : 107-134.

2) 부정에 대한 감사대책

부정에 대한 감사대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 SAS 82, ISA 240에서 설명하고 있다. 회계감사준칙 240과 ISA 240에서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의 전체적인 감사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 SAS 82에서는 부정 관련 감사위험 평가결과에 대해 감사인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대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위험평가에 의해 입안된 감사절차의 실시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감사인이 그 부정이나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적절히 수정 혹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회계감사준칙

240의 15).

또한, 감사인은 부정 관련 위험고려요소를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감사 절차의 변경 없이 식별된 위험요소의 대응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식별된 위험요소의 대응을 위하여 감사절차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결과가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특정 계정금액, 거래의 분류 또는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개별적 감사절차를 요구하는 지 판단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위험을 충분히 경감하기 위하여 계획된 절차를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감사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회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3. 부정감사 제도

1) 우리나라의 부정감사제도 : 회계감사준칙 240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계감사기준이나 미국회계감사기준처럼 부정과 오류에 대한 기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준칙 중 240에서 부정과 오류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은 기본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의 서문과 체계를 그대로 따왔지만, 정작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세한 설명대신 생략한 것이 많다. 특히 “240부정과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감사기준의 그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계감사준칙 240에서는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 고유한계와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의 감사절차, 부정과 오류의 보고, 감사계약의 취소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보론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회계감사준칙 240과 보론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론
- ② 경영자의 책임
- ③ 감사인의 책임
- ④ 감사의 고유한계
- ⑤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의 감사절차
- ⑥ 부정과 오류의 보고
- ⑦ 감사계약의 취소

⑧ 보론 -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의 예시

- ① 서론에서는 회계감사준칙 240의 목적과 함께 부정과 오류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② 경영자의 책임에서는 부정과 오류의 방지 및 발견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③ 감사인의 책임에서는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과 오류 발생의 억제책으로써 위험평가와 적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 ④ 감사의 고유한계에서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의 감사절차에서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감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⑥ 부정과 오류의 보고에서는 부정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영자와 감사보고서 이용자, 관계기관 등에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⑦ 감사계약의 취소에서는 감사대상회사가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감사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⑧ 보론에서는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의 예로서, 첫째, 경영진의 정직·성실성과 능력이 관련된 의문, 둘째, 조직 내부 또는 조직에 대한 비정상적인 압력, 셋째, 비정상적인 거래, 넷째,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다섯째, 전산환경하에서의 독특한 요소 등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에서는 부정과 오류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아, 내용이 개략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감사기준이나 미국감사기준과 동일한 면이 많다.

2) 미국의 부정감사기준 : SAS 99

미국에 있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발견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왔으나, 이러한 책임은 일반의 기대(Public expectation)에 부응하지 못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위원회(Auditing Standard Board)는 부정의 발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감사인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에 SAS(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99를 발표하였다.

SAS 99는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①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및 위험에 대한 평가(Assessment)
 - ②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감사인의 대응조치(Response)
 - ③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 ④ 감사문서화(Documentation)
 - ⑤ 감사위원회 및 제3자에 대한 보고(Communication)
-
- ①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의 2 가지 유형과 감사위험과 부정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감사인의 대응조치에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전반적인 고려사항, 개별적 고려사항, 개별적 대응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③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감사결과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발견한 경우,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감사문서화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문서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⑤ 감사위원회 및 제3자에 대한 보고에서는 부정의 유형 및 강도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와 제 3자에 대한 공시방법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미국의 SAS 99는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과는 달리 하나의 기준서로서 부정 감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부정감사기준이지만, 공공부문에서도 함께 이용될 정도로 그 논리적인 체계성과 정합성을 인정받고 있다.

3) 국제회계사연맹의 부정감사기준 : ISA 240

국제회계사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 IFAC)의 국제감사실무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Practices Committee : IAPC)는 2001년 3월에 기존의 부정과 오류 관련 감사기준서인 ISA 240 ‘부정과 오류(Fraud and Error)’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서 시안 ISA 240 ED(Exposure Draft) “재무제표 감사에서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 책임(The Auditor’s Responsibility to Consider Fraud and Error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을 공시하였다. ISA 240 ED는

2001년 6월에 현행 ISA 240으로 확정되었다.

IAPC의 의장인 Robert Roussey가 언급했듯이 개정된 ISA 240의 목적은 재무제표 부정과 오류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 내부통제자,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SA 240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서론(Introduction)
- ② 부정과 오류의 특징(Fraud and Error and their Characteristics)
- ③ 경영자와 통제계층의 책임(Responsibility of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of Management)
- ④ 감사인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the Auditor)
- ⑤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감사절차(Procedures when Circumstances Indicate a Possible Misstatement)
- ⑥ 부정의 징후 고려(Considering Whether an Identified Misstatement May be Indicative of Fraud)
- ⑦ 부정에 대한 평가와 감사보고서에의 영향(Evaluation and Disposition of Misstatements, and the Effect on the Auditor's Report)
- ⑧ 문서화(Documentation)
- ⑨ 경영층에 대한 보고(Management Representations)
- ⑩ 의사소통(Communication)
- ⑪ 감사철회(Auditor Unable to Complete the Engagement)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론(Introduction)에서는 기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부정과 오류의 특징(Fraud and Error and their Characteristics)에서는 부정과 오류의 정의와 그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경영자와 통제계층의 책임(Responsibility of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of Management)에서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 및 적발에 대한 기본 책임이 경영자와 통제계층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감사인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the Auditor)에서는 감사인의 책임이 부정과 오류의 예방이 아니라 부정과 오류에 대한 합리적 확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부정의 징후가 있는 경우의 감사절차(Procedures when Circumstances Indicate a Possible Misstatement)에서는 내부통제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부정과 오류의 징후가 있는 경우의 감사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⑥ 부정의 징후 고려(Considering Whether an Identified Misstatement May be Indicative of Fraud)에서는 재무제표에서의 부정의 징후에 대한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⑦ 부정에 대한 평가와 감사보고서에의 영향(Evaluation and Disposition of Misstatements, and the Effect on the Auditor's Report)에서는 발견된 부정과 오류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⑧ 문서화(Documentation)에서는 감사시 부정위험과 증거에 대한 문서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⑨ 경영층에 대한 보고(Management Representations)에서는 경영층에 보고할 사항과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⑩ 의사소통(Communication)에서는 내정된 후임감사인에게의 조언과 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⑪ 감사철회(Auditor Unable to Complete the Engagement)에서는 부정과 오류로 인해 계속감사가 불가능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국제회계사연맹의 ISA 240는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 240과는 달리 하나의 기준서로서 부정 감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은 물론 SAS 99와도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한 나라만의 기준이 아닌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위한 기준인 만큼 그 논리적인 체계성과 정합성을 인정받고 있다.

Ⅲ. 부정감사기준의 비교분석

SAS 99는 부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과 그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무적 지침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240 또한 부정과 오류가 재무제표 감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SAS 99와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 240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정감사기준의 제정 방향의 기본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정감사제도를 회계감사준칙 240과 SAS 99를 통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총괄적 비교

미국의 SAS 99는 부정과 관련하여 미국 내는 물론이고 국제적 기준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이다. 또한 ISA 240도 부정과 오류가 재무제표 감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과의 비교는 논리성과 정합성을 가진 부정감사기준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부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기준인 SAS 99는 좀 더 미국 감사환경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엄격하게 부정감사와 관련된 실무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ISA 240은 국제감사기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모든 상황과 여건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조문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과 ISA 240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부정과 오류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SAS 99는 부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정하고 감사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기본적 전제를 담고 있다.

셋째, SAS 99는 매뉴얼화 된 감사지침을 제공하여 감사인의 판단보다 표준적인 부정감사에 대한 감사품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ISA 240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그에 따른 감사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40의 경우 체계만을 국제감사기준에서 따왔을 뿐 논리적인 설명과 예시보다는 법규처럼 조항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2. 세부 조항 비교

1) 감사기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범위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의 목적, 정의 그리고 범위를 비교

하면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목적과 정의는 세 기준 모두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ISA 240이 부정과 오류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 미국 기준은 부정만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 기준을 부정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미국 감사환경에 기인된 것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정하고 감사인이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기본적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목적, 정의 그리고 범위의 비교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목적	· 재무제표 감사에서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	· 부정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이행을 위한 지침과 기준수립	· 재무제표 감사에서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지침과 기준수립
정의	· 부정 : 비리 또는 불법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 이해관계자(예 ; 경영자,종업원,공급자)들의 의도적 행위 · 오류 : 비의도적인 재무제표 관련 실수	· 부정 : 의도적인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	· 부정 : 비리 또는 불법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 이해관계자(예 ; 경영자,종업원,공급자)들의 의도적 행위 · 오류 : 비의도적인 재무제표 관련 실수
범위	· 부정과 오류를 포함	· 부정에 초점을 맞춤	· 부정과 오류를 포함
유형	· 경영자부정 對 종업원 부정 · 재무제표부정 對 자산 횡령	· 재무보고부정 對 자산횡령	· 경영자부정 對 종업원부정 · 재무제표부정 對 자산횡령

2) 책임(responsibility)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모두 모두 부정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ISA 240은 SAS 82 보다 폭 넓게 경영자와 함께 내부통제자(예,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 등)의 부정과 오류 예방 및 적발에 대한 책임성이 존재함을 규정하고 있다

SAS 99와 ISA 240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인의 부정과 관련된 감사책임은 절대적 수준의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확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관

계자가 기대하는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절대적 수준의 확신은 감사의 고유한계(예, 표본감사, 내부통제제도 한계, 감사인의 판단 등)로 인해 그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SAS 99는 모두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인이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해 정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 책임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경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의 기본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기본 책임은 경영자에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의 기본 책임은 경영자와 통제책임자(예, 감사위원회)에 게 있음 경영자는 기업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부정과 오류를 예방 및 적발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유지하고 통제 환경을 수립할 책임을 부담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질 수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은 부정 또는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획득하기 위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표시 감사인은 단지 부정과 오류에 의한 중대한 재무보고 왜곡표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대한 책임은 없음
고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히 계획되고 수행되더라도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함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은 판단, 부정의 은폐, 문서의 조작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획득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획득할 수 없음 감사인은 자신의 판단, 내부통제 한계, 수집가능 증거 한계 등으로 감사상 고유한계를 가짐 부정과 경영자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오류나 종업원 부정보다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음 감사이후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의 추가적 발견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확신 획득 실패 부적절한 감사계획, 성과 신의성실의 부족 ISA 이행의 실패

3) 감사 초기 단계

회계감사준칙 240에서는 감사초기단계에서의 감사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SAS 99와 ISA 240에서는 규정한 감사인이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 초기 단계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준칙 240, ISA 240과 SAS 99 모두 전문가적 회의주의(Professional Skepticism)²⁾와 당사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ISA 240은 SAS 99보다 감사계획 단계와 내부통제자에 대한 질의의 중요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인은 내부통제자에게 다음 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의뢰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부정위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 회계감사준칙에서는 “240 부정과 오류”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200 재무제표감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에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부정감사 초기단계에서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4) 위험

SAS 99와 ISA 240은 모두 부정과 감사위험간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정위험의 범주를 경영자 특성, 산업 상황 및 영업특성으로 구분하였고, 부정위험도 재무제표와 자산회령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위험의 평가에서 상황적 요소(예, 의뢰회사 규모, 소유구조 등)에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회계감사준칙 240은 조항 7, 8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고유위험과 적발위험과 관련하여서는 SAS 99와 ISA 240은 모두 그 세부적인 사항과 예를 설명하고 있다. ISA 240과 SAS 99는 부정위험에 범주를 동일하게 경영자 특성, 산업 상황 및 영업특성으로 구분하였고, 부정위험도 재무제표와 자산회령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ISA 240과 SAS 99 모두 부정위험의 평가에서 상황적 요소(예, 의뢰회사 규모, 소유구조 등)에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행 ISA 240은 SAS 99보다 예시의 세부적인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이다.

2) 전문가적 통찰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일관성 있게 견지해야 할 정신적 자세이다. 예를 들어, IAPC(International Auditing Practices Committee)는 감사인은 모든 감사과정에서 ISA 200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Objective and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을 준수하는 전문가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ISA 240은 경영자 특성에 관련된 부정위험을 크게 경영자의 동기, 태도, 그리고 내부통제제도에 따른 기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회계감사준칙 240에는 그 설명이 없으며 “400 감사위험평가와 내부통제”에서 고유위험과 적발위험의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 예는 240의 <보론>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 또는 사건의 예시”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4>은 비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4> 위험(Risk)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감사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정과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 발견된 부정과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경영자에게 질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으로 인한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은 감사위험의 일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에 의해 중대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부절절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감사위험이 있음 · 감사인은 세 가지 감사위험을 확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위험(inherent risk) -통제위험(control risk) -적발위험(detect risk)
고유 위험 적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준칙 “400 감사위험 평가와 내부통제”에 따라 고유위험과 적발 위험 평가절차를 설명함 · 회계감사준칙 240의 <보론>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 또는 사건의 예시”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부정 재무보고와 자산회령으로 인한 “부정 위험”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의 특성(동기, 태도 등) - 산업상황 - 영업특성 · 부정위험은 해당기업의 규모, 소유구조 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에 예시 제공 · 감사인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 요구 · 감사인은 부정위험의 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감사절차 수정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ISA 400 “위험평가와 내부통제”에 따라 고유위험과 적발 위험 평가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 위험을 판단할 때, 부정 재무보고 또는 자산회령의 징후를 나타내는 “부정 위험”의 존재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위험의 고려는 부정의 동기, 수단, 부정발생가능성 징후, 기회 등의 확인을 의미 · 부정위험은 해당기업의 규모, 업종, 통제시스템 특징 등 상황적 요인을 고려 · 부록에 그 예시 제공

5) 부정징후의 발견과 감사절차 수정

회계감사준칙 240은 부정징후 발견후 감사절차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만, 부정징후 판단에 대한 조항은 없다. 반면 현행 ISA 240은 감사인이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별 감사인의 대응, 그리고 감사

절차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SAS 99도 그 기본 내용과 형태는 현행 ISA 240과 대동소이하지만, 감사인의 대응에 있어 상황 이외에도 거래유형, 금액, 경영자 주장 등과 같은 영향요인의 고려를 강조했다.

또한 현행 ISA 240은 부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로 부정의 징후가 확인된 경우 감사에 대한 그 의미와 조직구조에서 관련자의 위치 등을 평가하고, 특히 경영진의 부정 담합이 존재하는 경우, 이전에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 회계기록의 진실성, 진술의 완전성 등을 제고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SAS 99도 현행 ISA 240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부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면, 그 영향과 부정행위자의 조직내의 지위를 파악하고 그 함축된 의미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표 5>는 비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5> 부정징후와 감사절차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부정 징후 발견 후 감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위험평가에 의해 입안된 감사절차의 실시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만약 감사인이 부정이나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경우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수정 혹은 추가적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위험요인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은 상황, 거래유형, 금액, 경영자 주장에 따라 결정 · 감사절차의 성격, 입증감사의 시기 및 감사절차의 범위에 대한 수정 고려 · 부정 재무보고와 자산형평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부록 3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시 제공 · 감사인은 감사종료 이전에 감사계획 단계에서 감사위험 요소의 평가에 대한 수정 또는 감사절차의 속성, 시기 및 범위의 수정 여부 고려 · 감사절차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증절차의 속성, 시기 및 범위 수정 - 내부통제의 효과성 평가 - 적절한 감사팀원의 배치
부정 징후 판단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감사절차 및 관찰결과의 누적내용이 감사계획단계에서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의 영향과 부정 행위자의 조직내의 지위를 파악하고 그 함축된 의미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확인한 후, 그러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왜곡 재무제표와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간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의 결과이면, 감사인은 그 의미, 조직구조에서 관련자의 위치 등을 평가 · 경영진의 부정 담합이 존재하는 경우 이전에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 회계기록의 진실성, 진술의 완전성 등을 제고해야 함

6)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와 문서화

ISA 240과 SAS 99는 동일하게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부정에 기인한 것인지, 그 의미가 감사결과 및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가를 감사인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ISA 240과 SAS 99는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에서 중요성(Materiality)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히 큰 금액으로 정의된다. 중요성은 감사위험과 감사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더욱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또한 현행 ISA 240과 SAS 99는 부정위험평가에 따라 확인된 부정위험요인, 그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등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SAS 82는 감사단계별 즉, 감사계획과 이행단계별로 구분하여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준칙 240에는 이러한 조항이나 규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는 이러한 비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6>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와 문서화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와 감사보고서 영향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결정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거나 그 중요성 평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에 대한 함축적 의미 -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 증거획득 -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부정 또는 오류의 결과로 재무제표가 증대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처리 및 평가에 지침이 되는 ISA 320 "감사 중요성"과 ISA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감사과정에서의 의미를 고려해야 함
문서화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와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감사단계별로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단계 : 식별된 부정 관련 위험의 고려 내용, 감사인의 대응절차 - 실시단계 :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정위험 또는 상황, 추가적인 대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감사인의 평가과정(조항 32)에서 확인된 부정위험의 문서화, 또한 이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방안(조항 39)도 문서화 · 감사인은 ISA 230 "문서화" 기준을 참조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증대한 왜곡표시의 고유 또는 통제위험의 평가를 통해 부정위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면, 이러한 부정위험을 문서화해야 함

7) 부정의 보고

부정의 보고에 있어 회계감사준칙 240과 SAS 99, ISA 240 모두 경영자, 재무제표이용자,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과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시스템의 주요약점에 대한 보고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준칙 240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SAS 99와 ISA 240에서는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표 7>은 비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7> 부정의 보고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보고 책임	조항 19~23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실제로 발견된 경우 경영자와 발견사실을 논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부정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절한 경영층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감사인은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확인 한 경우 경영자, 내부통제자, 감독기관에 해당 정보를 의사소통 해야 할 책임 고려 · 부정의 성격, 범위, 빈도 그리고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경영진 중 적정 권한을 가진 경영자 선정 · 감사인이 기업 내부통제자와 의사소통 할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러한 사안으로는 - 경영자의 적격성과 성실성에 대한 의구심 - 경영자 가담 부정 -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 - 재무보고의 설계 및 운용을 포함하여 통제시스템의 중대한 약점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보고-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 약점	조항없음	· 감사인은 부정과 내부통제절차와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와 감사위원회에 의사소통 해야 함	·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 또는 적발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대한 약점을 경영자에게 의사소통 해야 함 · 경영자에 의한 또는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에 의해 확인된 부정 예방 및 적발과 관련된 중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약점을 내부통제자에게 제공 · 감사인은 경영자 또는 내부통제자에 대한 신의 또는 성실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함
보고-감독기관	· 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하는데 제약요소가 되지만 특정상황에서 이 의무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제될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부정 공시는 감사인의 책임의 일부가 아님 · 단지 다음 사항은 감사인의 책임 가능성이 있음 - 특정 법률, 관계당국 규제 - 감사교체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 정상적인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무는 의뢰인의 정보를 기업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나라마다 감사환경 또는 법률 체계에 감독기관 보고의무는 상이함

8) 감사계약 취소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은 모두 부정으로 인한 중대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에 따른 감사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후임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감사계약의 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ISA 240이 좀 더 상세하게 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임감사인과의 의사소통부분에 있어서는 SAS 99가 후임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는데 반해 회계감사준칙 240과 ISA 240은 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시 전임감사인의 취할 행동까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8>은 비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8> 감사철회

차원	회계감사준칙 240	SAS 99	ISA 240
감사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이 재무제표상 중요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부정과 관련된하여 감사인이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감사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최고위직의 관련이 갖는 의미와 감사인이 계속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매우 중대한 경우 감사계약의 취소 여부와 이를 감사위원회에 감사계약 취소 사유를 전달할 것인지 결정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취소할 것이 적당한 지 여부는 주요 경영자 또는 이사회가 동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얼마나 성실하고 협조적인지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감사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은 각 상황에 적용되는 전문적 및 법률적 책임 고려 i) 적정 지위의 경영자와 내부통제자와 감사철회 이유에 대해 토의 ii) 감사철회와 이유에 대한 전문적 또는 법률적 보고 책임 존재 고려
후임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에 따라 후임 감사인에게 감사철회 이유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함 감사인은 만약 경영자가 후임 감사인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차기 예정감사인에게 공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임감사인과 전임 감사인의 의사소통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에 따라 후임 감사인에게 감사철회 이유에 대해 의사 전달을 해야 함 감사인은 만약 경영자가 후임 감사인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함

IV. 공공부문 감사기준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민간부문에서는 부정감사기준이 존재하였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부정감사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민간부문 감사환경과 공공부문에서의 그것이 여러모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부정감사기준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의 부정과 관련된 이론과 미국 및 국제감사기준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부정감사기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부정감사기준이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3 가지 질문에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1) 목적 : 기준이 우선시 해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 (2) 환경 : 기준 제정에 앞서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가?
- (3) 주체 : 누가 기준 제정을 주도 할 것인가?

1. 목적 : 기준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떠한 제도나 기준이든 간에 그 개발에 앞서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부정감사기준의 개발에 있어 가장 먼저 부정감사기준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감사기준이 목적하는 바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정감사기준은 부정을 적발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부정을 예방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일단 부정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돌이키기 힘들며, 둘째, 현실적으로 모든 부정을 완전하게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이 발생한 후에 적발하기보다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부정감사기준의 목적 또한 1차적으로 부정의 적발 및 감사보다는 예방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환경 : 기준 제정에 앞서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가?

미국에는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정부회계기준과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정부감사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감사 및 부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비록 정부부문에서 부정감사만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민간부분인 부정조사인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의 '부정 적발 및 보고기준(Certified Fraud Examiner Standards for Fraud Detection and Reporting)'과 회계감사기준 SAS 99가 존재하여,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정감사 및 교육에 있어 그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부정조사인협회의 부정감사교육과정을 살펴보면(<표 2>) '부정 및 정부감사기준(Fraud and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표 9> 부정조사인협회의 교육과정

· 내부부정감사(Auditing for Internal Fraud) 부정조사이론의 개요, 부정감사방법론, 수평·수직적 분석, 구매, 재고, 급여 및 고정자산 등에서의 부정적발 기술
· 컴퓨터 부정(Computer Fraud) 컴퓨터 부정의 발생 원인, 조직 정책이 컴퓨터 보원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 부정사례
· 내부조사수행(Conducting Internal Investigation) 조직내부의 부정을 적발 및 조사하고 부정행위진술을 해석하는 방법
· 계약 및 조달 부정(Contract and Procurement Fraud) 이중청구(doubling billing), 가격협정(price fixing), 제품교체(product substitution) 등과 같은 계약 및 조달에 있어서의 부정을 조사, 적발 및 예방하는 방법
· 기업의 범죄책임(Corporate Criminal Liability) 부정범죄와 관련된 법규 준수 방법, 부정예방 및 저지 프로그램 구축 방법
· 금융기관부정(Financial Institution Fraud) 금융기관의 종업원 및 고객이 횡령하는 방법, : 대출부정, 뇌물 및 꺾기(kickback), 돈세탁 등
· 재무제표부정(Financial Statement Frauds) 기업이나 개인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법
· 부정 및 정부감사기준(Fraud and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정부감사기준, AICPA 기준, 부정적발 및 보고를 위한 부정조사인 기준
· 진술방법(How to Testify) 법적 절차, 직접 및 조사의 진술방법, 요점을 보고하는 방법
· 인터뷰 기술(Interview Skill) 정보수집심리학, 문제 인터뷰 처리 방법 등

자료 : <http://www.cfenet.com/>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을 위한 정부회계기준과 정부감사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제 겨우 기본적인 복식부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 250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에서 부정적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회계방식과 업무의 차이로 인해 참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회계감사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부정감사기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정감사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나 준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거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부회계기준이나 정부회계감사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법규적인 근거의 부재는 기준개발의 초기에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감사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기준과 부정감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부감사기준의 제정을 통해 부정감사교육과 관련된 이론적이고 법규적인 토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주체 : 누가 기준 제정을 주도 할 것인가?

공공부문의 부정감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누가 기준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기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 하면, 그 주체의 성격이나 인지도, 또는 경력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의 용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995년 자체로 감사교육원을 두어 지금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6만 8천여 개의 감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7천여 명의 자체감사요원, 13만 2천여 명의 회계업무종사자와 900여 명의 감사원 직원 등 총 14만 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의 신뢰성 확보’, ‘자체감사의 내실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부정감사기준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국내의 어느 기관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감사기준 제정의 주체를 공적기관인 감사원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학회, 교수,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과 같은 민간 전문가 집단에 위탁하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공적기관인 감사원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공공부문의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제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공공부문을 위한 부정감사기준의 개발 방향을 요약하면 <표 10>와 같다.

<표 10> 부정감사기준의 개발 방향

부정감사기준 개발방향	세 부 내 용
목 적	· 부정의 적발 및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둠
환 경	· 정부회계기준과 부정감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기준의 제정과 같은 제반 환경의 구축
주 체	· 주체 : 감사원(공적기관) · 참여 : 외부전문가단체(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

V. 결론

이미 세계는 투명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진입하였다. 각 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조직내의 부정의 예방과 적발을 경쟁력의 큰 요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감사를 함에 있어 부정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부정감사기준이나 제도의 제정에 있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국제회계사연맹의 부정감사기준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을 위한 부정감사기준의 개발 방향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것은,

- (1) 목적 : 기준이 우선시 해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 (2) 환경 : 기준 제정에 앞서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가?
- (3) 주체 : 누가 기준 제정을 주도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 부분의 부정감사기준의 개발에 있어 기초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 있어서 부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회계를 하는 사람들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공

공 부문의 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회계학에 있어서 부정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발맞추어 부정감사기준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의 부정 예방적 측면의 교육 또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찬태(1986) CPA의 역할과 책임, 경북대학교출판부.
- 권찬태, 안홍복(2002), “재무제표 감사시 부정과 오류”, 한국공인회계사회.
- 안홍복, 권기정(2004), “지방자치단체 부정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부정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연구 18권 4호 : 107-134.
-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 240 부정과 오류
- Bell, T.B., et. al.,(1991), Assessing the likelihood of fraudulent reporting : A cascaded logit approach, Working Paper.
- Bloomfield, R. J.,(1997), Strategic dependence and the assessment of fraud risk : A laboratory study, The Accounting Review 72 : 517-538.
- Caster, P. et. al.,(2000), Research on natur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ccounting errors : The need for a Muti-method approach,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 : 60-92.
- Eining, M. M., et. al.,(1997), Reliance on decision aids: An examination of auditors' assessment of management fraud, The Accounting Review 72 : 517-538.
- Hasen, J. V., et. al.,(1996), A generalized qualitative-response model and the analysis of management fraud, Management Science 42 : 1022-1032.
- Hylas, R. E. and R. H. Ashton,(1982), Audit detection of financial ststement error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 751-765.
- ISA 240. The Auditor's Responsibility to Consider Fraud and Error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Kreutzfeldt, R. W. and W. A. Wallace,(1986), Error characteristics in audit populations : their profile and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factor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6 : 20-43.

Loebbecke, J. K., et. al.,(1989), Auditors' experience with material irregularities : Frequency, nature, and detectabi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8 : 1-28.

Nieschwietz, R. J., et.al.,(2000), Empirical research on external auditor detection of financial statement fraud,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 : 190-246.

Pincus, K. V.,(1989), The efficacy of a red flags questionnaire for assessing the possibility of fraud,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4 : 153-163.

Ramage, J. G.,(1979), An empirical study of error characteristics in audit popul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7 : 72-102.

SAS 99. 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Summers, S. L. and J. T. Sweeney,(1998), Fraudulent misst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nsider trading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14 : 131-146.

Zimbelman, M. F.,(1997), The effect of SAS No.82 on auditors' attention to fraud risk factors and audit plann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75-97.

저자약력 : 저자는 경북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회계부정 및 윤리, 기업투명성, 행정 투명성 분야이다.